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3.

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9월 4일, 진중오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5년 9월 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 11. 17.) 상정, 제안설명, 검토
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026. 2. 25.)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 2. 26.)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진중오의원)

현행법령에 따르면 공연장운영자는 공연장 무대에 화재로 인한 화염 및 연기가 관람석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화막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좌석 수가 1천 석 미만인 공연장 등은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공연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천 석 미만의 중소규모 공연장 또한 화재의 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소규모 공연장은 대피 출구가 적은 경우가 많아 방화막의 설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방화막 설치 대상 공연장이 아닌 공연장의 운영자가 공연장 무대에 방화막을 설치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규모 공연장의 화재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설치 대상 공연장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개정안은 방화막의 기준을 한국산업표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방화막 설치 의무 대상을 프로세니엄 형태의 300석 이상 공연장으로 확대하며, 설치 의무가 없는 공연장이 자율적으로 방화막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공연장의 안전 기준을 실질적인 위험 수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중·소 규모 공연장의 화재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화막에 KS 규격을 명시할 경우 천재질 방화막이 배제되어 강재질의 방화막을 제작하는 특정업체만을 허용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고, 건축구조상 방화막 설치 시 건축 구조물 및 프레임 하중 등으로 화재 발생 시 대피로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방화막이 오히려 무대작업자와 공연자의 위험도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을 심사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장 : 임오경위원)

한국산업표준(KS) 규격에 따른 내화성의 방화막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설치 대상 공연장의 형태 및 구조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수정 의결함.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내용

개정안은 300석 이상의 공연장을 방화막 설치 대상 공연장으로 하였음에도, 부칙에서 설치 의무규정이 적용되는 공연장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아니하여 개정 법률의 적용 범위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임.

이에 ‘방화막 설치에 관한 적용례’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방화막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를 둠.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2.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규격에 따른 내화성의 방화막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경우 특정 소재의 방화막 설치할 수밖에 없게 되는 문제점에 따라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방화막 설치 대상이 되는 공연장의 형태 및 구조는 절차적·기술적 사항이므로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함(안 제11조의7제1항).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1조의7제1항 본문 중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KS)규격에 따른 내화성의”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내화성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프로세니엄 형태의 300석”을 “300석”으로, “해당 기준”을 “공연장의 형태 및 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의무에서 제외한다”를 “제외한다”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1조의7(방화막의 설치) ① 공연장운영자는 공연장 무대에 방화막(화로 인한 화염 및 연기의 관람석 확산을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내화성의 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연장의 규모·형태 및 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의 공연장운영자는 제외한다.	제11조의7(방화막의 설치) ① ----- ----- ----- ----- <u>「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 산업표준(KS)규격에 따른 내화성의</u> ----- ----- ----- <u>. 방화막 설치 대상 공연장은 프로세니엄 형태의 300석 이상의 공연장으로 하며, 해당 기준--</u> ----- ----- <u>의무에서 제외한 다.</u>	제11조의7(방화막의 설치) ① ----- ----- ----- ----- <u>--내화성의--</u> ----- ----- ----- <u>. --방화막 설치 대상 공연장은 300석 이상의 공연장으로 하며, 공연장의 형태 및 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u> ----- ----- <u>--제외한다.</u>

<u><신 설></u>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방화막 설치 의무가 없는 공연장운영자가 공연장 무대에 방화막을 설치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방화막의 성능기준 등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화막의 성능기준 등 설치, 비용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③ (개정안과 같음)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7제1항 단서 중 “공연장의 규모·형태 및 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방화막 설치 의무대상 공연장은 300석 이상의 공연장으로 하며, 공연장의 형태 및 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설치에”를 “설치, 비용 지원 절차 등에”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방화막 설치 의무가 없는 공연장운영자가 공연장 무대에 방화막을 설치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화막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연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

터 적용한다.

제3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방화막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공연장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이후 5년 이내에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를 거쳐 제11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화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의7(방화막의 설치) ① 공연장운영자는 공연장 무대에 방화막(화재로 인한 화염 및 연기의 관람석 확산을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내화성의 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u>공연장의 규모·형태 및 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의 공연장운영자는 제외한다.</u>	제11조의7(방화막의 설치) ① ---- ----- ----- ----- ----- ----- <u>. -----방화막 설치 의무대상 공연장은 300석 이상의 공연장으로 하며, 공연장의 형태 및 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u> -----.
<신 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방화막 설치 의무가 없는 공연장운영자가 공연장 무대에 방화막을 설치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방화막의 성능기준 등 <u>설치에 필요한 사항</u> 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 <u>설치, 비용지원 절차 등에</u> ----- -----.